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23일, 김현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4.9.)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4.30.)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5.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현의원)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제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목표의 도전성’ 관련 사항이 부재함. 또한, 과제가 우수한 경우 후속과제 연계가 가능하나 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정평가로 인해 우수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연구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제계획 시부터 혁신적 연구목표가 설정되고, 목표 미달성한 경우에도 성실히 연구수행 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과제의 후속과제는 선정평가 없이 추진되도록 법 개정 필요한 실정임. 아울러, 우수성과 활용·확산과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해 성과의 가치 제고목적의 사용용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비영리 기관의 기관별 기술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시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 및 기술료 사용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평가등급 개편에 맞춰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을 기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불량’에서 ‘수

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5항제3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안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후속과제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수행주체를 기존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의 유연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은 기초연구 단계에서 실무를 주도했던 '참여연구자'가 후속 응용연구 단계에서는 '연구책임자'를 맡아 프로젝트를 이끄는 등 연구 성격에 따라 수행 주체의 역할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개정안과 같이 지정 대상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정할 경우 단절 없는 후속연구 수행에 오히려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 범위에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자'를 넓게 포함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32조제1항제1호와 같이 제재처분의 요건을 기존 '극히 불량'에서 '부적절한'으로 개정할 경우, 의도치 않게 제재처분의 적용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극히 불량한'이라는 표현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로 제재 대상을 엄격

히 한정하는 의미를 갖는 반면, ‘부적절한’이라는 표현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행과정상의 오류나 단순 절차 미숙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음.

특히 ‘성실한 실패’와 제재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수행과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정 전후의 제재 예측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우려도 있음.

따라서 연구자의 행정적 제재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려는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한정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거나, 하위 법령을 통해 ‘부적절한 수행과정’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